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 성매매는 불법이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



성매매
없는
세상

<http://web.yonsei.ac.kr/hel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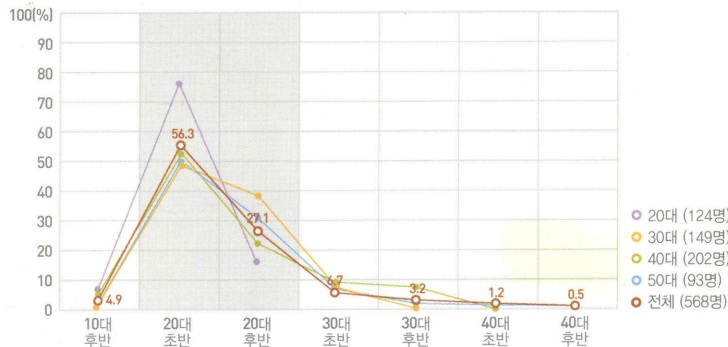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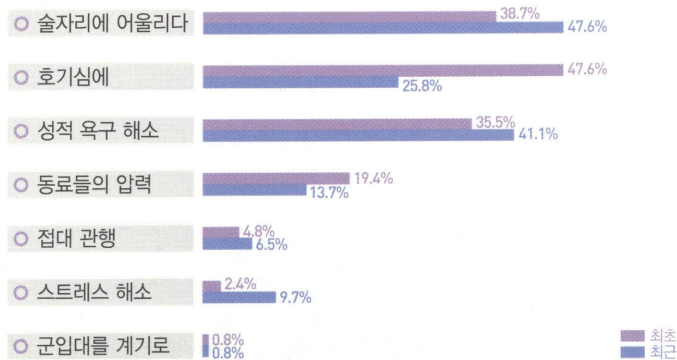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학생회관 206호)
Tel_02-2123-2118 Fax_02-2123-8072 helper@yonsei.ac.kr

20대와 성매매

처음으로 성구매를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대 남성들은 왜 성구매를 할까요?



20대와 성매매의 관계

20대 초반과 후반에 호기심에 처음으로 성구매를 하고, 이후에는 술자리에 어울리거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07년)

오해와 편견

Q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A 실제로는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이 정비례합니다. 즉, 성매매가 늘어날수록 성폭력 발생률도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Q 성매매 여성은 많은 돈을 쉽게 벌지 않나요?

A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은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뒤통수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 강요로 인한 질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결국 이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됩니다.

Q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남성의 돈을 착취하는 것 아닌가요?

A 성매매 여성이 성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현실에서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학대, 비인간적 처우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입니다.

Q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 같은데요?

A 성산업이 음성화되는 것은 금지시켜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성 구매자들이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성적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에 맞춘 다양한 음성적인 성산업 및 알선업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매매의 음성화는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구매자들이 합법화된 나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를 총당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 및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자립 근거 마련
○ 성매매 피해여성	포주 등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피해자 간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성매매자 (성 구매자, 성 판매자)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 시킨 자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감금과 낙태 강요 등	3년 이상 유기징역
○ 폭력조직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5년 이상 유기징역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 단순 성매매 알선(건물주 포함)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 목적의 광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 게재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 성매매 여성의 불법적인 빚(선불금)	무효
○ 보상금 제도	인신매매 신고시 최고 2000만원



이렇게 합시다

하나,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합시다

현대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성산업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그 사회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의 나는 언제나 교묘하게 나의 심리를 파고드는 성구매의 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둘, 성구매를 하는 이유를 돌아봅시다

'친구 따라', '집대를 위해서', '다들 하니깐', '호기심에'... 선후배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는 남성들의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구매를 하시나요? 언제까지나 주위 사람들이나 남들의 핑계를 대면서 악습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셋, Just Say No!!

성구매의 유혹이 있을 때, 선택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성구매를 통해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Just Say No!!! 당신의 한 마디가 거대한 성산업의 고리를 끊는 힘이 됩니다.

성구매는 구매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련 사이트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청<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117
- 여성부 <http://www.moge.go.kr>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 법무부 <http://www.moj.go.kr/>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무엇이 변화하였나요?

변화 01 인권존중 사회로 도약

- ◆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 사례 64.6% 감소
- ◆ 납치·감금·성매매강요·선불금 착취 사례 줄어

[인권유린 사례현황]

2004년 하반기 379건
2007년 상반기 134건 (64.6% 감소)

변화 02 성매매집결지 대폭 축소

- ◆ 성매매업소 41% 감소
- ◆ 성매매 종사자 55% 감소

[성매매업소 현황]

2004.9 1,679개소
2007.8 992개소 (41% 감소)

[성매매종사자 현황]

2004.9 5,567명
2007.8 2,523명 (55% 감소)

변화 03 단속과 처벌 강화

- ◆ 약소화된 성매매 연결고리 차단
- ◆ 성매매 알선업자 1만 3천여명 검거
※ 2004년부터 2007년 6월말까지 누적검거 현황
- ◆ 재산·물수 추징과 건물주까지 처벌

[알선업자 검거현황]

2004년 2,824명
2006년 3,653명 (30% 증가)

[건물주 처벌현황] 2006.7~2007.6

190명 입건 + 475명 경고통지 = 665명 합계

변화 04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 기반 마련

- ◆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전 과정 지원
- ◆ 자활지원 2배 증가
-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 실질적인 자활 지원

[의료지원]

2004년 6,721건
2006년 14,028건

[법률지원]

2004년 8,530건
2006년 16,72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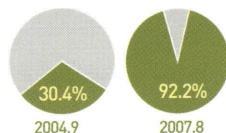
[직업훈련지원]

2004년 2,109건
2006년 3,596건

변화 05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 ◆ 국민의식의 전환
→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 92.2%
- ◆ 성매매로 유발되는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성매매 불법성 인지도]



〈성매매방지법 시행3년 리포트, 여성가족부, 2007년〉

용어바로알기

성매매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금전을 매개로 하여 사고 파는 행위.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래의 통칭. 이 용어를 사용하여 성상품화로 인하여 인간, 특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적 현실을 부각시키고자 함

성구매자

성매매 피해자여성과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남성. 불가피하게 업소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하거나, 사회적인 용례를 비판하고자 할 때 '고객' 또는 '손님'으로 작은따옴표로 묶어 표기

성매매피해자

- ◆ 위계,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 유인된 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두 개의 법을 통칭하여 '성매매방지법'이라고 함

